

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. 1. 21 선고 2019가단33254 판결 [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등]

전 문

원고A

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윤경

피고1. B

2. C

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용우

변론 종결2019. 12. 17.

판결 선고2020. 1. 21.

주 문

1. 원고에게,

가.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가운데 강원도 동해시 D 대 46㎡ 중 별지 도면 표시 1, 2, 3,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(ㄴ) 부분 1㎡ 지상 부분을 철거하고, 위 토지를 인도하며,

나. 피고 C은 위 가항 기재 건물 부분에서 퇴거하라.

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

갑 제1, 2, 3호증(일부 가지번호 생략)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 피고 B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일부가 원고 소유인 강원도 동해시 D 대 46㎡ 중 별지 도면 표시 1, 2, 3,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(ㄴ) 1㎡ 지상 부분에 위치하고 있는 사실, 피고 C이 위 건물을 점유하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.

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따르면,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피고 B은 위 건물 중 침범 부분을 철거하고, 그 토지를 인도하며, 피고 C은 위 건물 중 침범 부분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.

2.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

피고들은 원고의 철거 및 인도, 퇴거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, 을 제1,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B이 원고를 상대로 강원도 동해시 E 대 213㎡ 중 7㎡ 지상 부분에 있는 원고의 주택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청구하여 2019. 5. 15. 승소판결을 받은 사실, 원고가 위 판결에 대하여 2019. 5. 29. 항소를 제기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, 위 항소일로부터 얼마 되지 않은 2019. 6. 7.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. 그러나 원고가 철거를 구하는 건물 면적 부분이 1㎡ 정도에 그치는 점이나 위와 같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분쟁 경과를 고려하더라도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피고 B의 청구와는 달리 주관적으로 오로지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그 목적이 있을 뿐 아무런 이익이 없다거나, 객관적으로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(피고들의 2019. 12. 16.자 준비서면에 의하더라도 피고 B도 건물을 철거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기도 하였다는 것이다),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.

3. 결론

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,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8조를 적용하며, 가집행의 선고를 붙이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이규영

별지